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399
----------	-------

발의연월일 : 2019. 1. 30.

발의자 : 이상현 · 최인호 · 송옥주

이동섭 · 강길부 · 정세균

조승래 · 서형수 · 김병기

박재호 · 윤영일 · 안민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계적인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출판과 해외 홍보·교류 사업을 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을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문학”을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작품으로 정의하여 이미 “문학”의 정의에 “작품”的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 한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출판”的 정의에 “간행물” 발행 행위가 포함되어 있고, 같은 법에 따라 설치된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사업 범위에 “출판문화산업의 국외진출 지원”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한국문학번역원의 사업 범위와 중복될 여지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중복된 표현을 정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의 사업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13조).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를 각각 “한국문학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문학작품 및 간행물 교류”를 “문학 교류”로, “외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를 “외국문학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한국문학번역원) ① 체계적인 <u>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출판과 해외 홍보·교류 사업</u>을 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을 둔다.</p> <p>② (생략)</p> <p>③ 한국문학번역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출판 사업</u> 2. <u>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가 양성 사업</u> 3. <u>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세계화 관련 기획·조사·연구 사업</u> 4. <u>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해외 교류·홍보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u> 5. <u>문학작품 및 간행물 교류 활성화를 위한 외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한국어 번역·출판 사업</u> 6. (생략) ④ ~ ⑦ (생략) 	<p>제13조(한국문학번역원) ① ----- -----<u>한국문학의</u>-----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u>한국문학의</u>----- ----- 2. <u>한국문학의</u>----- ----- 3. <u>한국문학의</u>----- ----- -- 4. <u>한국문학의</u>----- ----- ----- 5. <u>문학 교류</u>----- -----<u>외국문학의</u>--- ----- --- 6.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p>